

갈현2동 주민자치회 회의록

회의명	2024년 3월 임원·운영진 회의				
회의일시	2024. 3. 5.(화) 18:30				
장 소	주민자치회 사무실				
참석자 (총명)	박이순, 김경미, 사와이구미꼬, 오도연, 김선옥, 하종애, 이묘순, 이순임, 민경애, 지명희, (총10명)				
회의구분	정기회의	임원회의	운영진회의	분과회의	민관협력회의
		○	○		
논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24.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좌 신설 논의 ■ 2024.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 논의 ■ 2025. 마을의제 발굴 권역별 일정논의 ■ 2024.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위원회 논의 				
회의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보고사항				
	<input type="radio"/> 2024. 주빌리 오케스트라 봉사 현황				
	- 2월 봉사 일정				
	3일	17일	24일		
	강대식	김경미	김남곤		
	- 3월 봉사 일정				
	2일	9일	16일	23일	
	김종팔	김승리	김부호	김선옥	
	- 4월 봉사 일정				
	6일	13일	20일	27일	
김종팔	김승리	김부호	김선옥		
※ 변동사항이 있을 시 사무국으로 연락					
<input type="radio"/> 2024. 자치회관프로그램 2분기 운영현황					
- 접수기간 : 2024. 3. 18.(월)~프로그램 총원 시까지					
- 수강기간 : 2024. 4. 11.(목)~6. 28.(금) ※공휴일 제외					
- 접수장소 : 갈현2동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회 사무실					
- 접수방법 : 선착순 본인 방문 접수(신분증 지참)					

- 2024. 2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일정(안)

구분	프로그램명	요일	시간	정원(명)	수강료(3개월)	재료비(3개월)	장소
시민교육	컴퓨터 기초	월수	09:30~11:00	15	45,000원	-	4층 컴퓨터실
	스마트폰 활용	월수	11:00~12:30	15	45,000원	-	
	생활영어	수	16:00~18:00	15	30,000원	-	3층소강좌실
문화여가	생활요가 A	월수	16:00~17:30	25	45,000원	-	3층 다목적실
	생활요가 B	월수	17:30~19:00	25	45,000원	-	
	수채화 배우기	월수	09:30~11:00	16	45,000원	재료비 별도	
	보태니컬아트	금	09:30~12:00	16	45,000원		
	시니어모델 A	화	13:30~14:30	15	30,000원	-	
	시니어모델 B	화	14:30~15:30	15	30,000원	-	

※ 프로그램은 자치회관 사정에 따라 휴강 될 수 있음

○ 각 분과회의 논의 진행 내용 공유

- 자치회관운영→동보물찾기→맛있는베토벤→소통과나눔→꿈꾸는미래

□ 논의사항

○ 2024. 자치회관프로그램 강좌신설 논의

- 역사보드게임, 수어교실, 재봉틀교실, 칼림바교실 선호도 진행 중(청 내 1층, 3층)

○ 2024. 상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 논의(의제개발 워크숍)

- 22대 선거로 인해 4월 정기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선거 후 의제 개발 워크숍으로 정기회의 대체(날짜는 4.16. or 4.23.)

○ 2025. 마을의제 발굴 권역별 일정 논의

	1권역(좌월공원일대)	소통과나눔분과
	2권역(우남아파트일대)	맛있는베토벤분과
	3권역(갈현초일대)	동보물찾기분과
	4구역(길마공원일대)	꿈꾸는미래분과
	주민센터 앞	자치회관운영분과

○ 2024.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위원회 논의

<1차회의>

- 일 시 : 2024. 3. 7.(수) 18:00

- 장 소 : 주민자치회 사무실

□ 기타사항

○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사항

-공무수행사

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.

-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(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)적용대상: 공무수행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제5조~제9조까지(부정청탁금지,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)적용

-공직선거법 제9조(공무원의 중립의무 등)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(기관 단체 포함)/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

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3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
2.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

3.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

2.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

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,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
사진기록

